

# 퇴직연금 세제개편방안

2006.1

근로기준국

## 1. 퇴직연금 과세체계

-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세 단계, 즉 부담금 불입단계, 적립금 운용단계, 퇴직연금 수령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,
  - 기본적으로 불입단계 및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(exempted)하였다가 수령시 과세(Taxed)하는 체계(소위 EET체제)를 취함

## 2. 단계별 세부내용

### □ 부담금 불입 단계

-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은 전액 손비 인정
  - 장부상 적립된 퇴직급여총당금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(40%)까지 손비로 인정하고 있었으나, 퇴직연금 전환 유도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·폐지
    - ※ 손금 산입되는 퇴직급여총당금 누적설정액을 퇴직급여추계액의 40%에서 '07~'08년 35%, '09년 30%로 단계적으로 축소
-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(확정기여형의 경우)에 대해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
  - ※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 퇴직급여 수령시 비과세

### □ 적립금 운용 단계

-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(이자)수익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는 비과세한 후,
  - 근로자가 퇴직급여(연금 또는 일시금)를 수령하는 단계에서 과세
    - ※ 급여 수령시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

## □ 퇴직급여 수령 단계

### ① 연금으로 수령시

- 국민연금, 개인연금 등 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하되, 일정 한도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인정

※ 즉, 퇴직연금을 포함한 총 연금액에서 소득공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소득세율(8%~35%)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

#### <소득세율>

종합소득과세표준	세율
· 1천만원 이하	· 8%
·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	· 80만원 + 1천만원 초과금액의 17%
·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	· 590만원 + 4천만원 초과금액의 26%
· 8천만원 초과	· 1,630만원 + 8천만원 초과금액의 35%

-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령의 개정으로 연금 소득공제금액 확대

#### <연금소득공제>

종 전		개정안	
<總 연금액(x)> 250万이하	<공제액> 총 연금액	<總 연금액(x)> 350万이하	<공제액> 총 연금액
250~500万이하	$250+(x-250)\times 0.4$	350~ 700万이하	$350+(x-350)\times 0.4$
500~900万이하	$350+(x-500)\times 0.2$	700~1400万이하	$490+(x-700)\times 0.2$
900万초과	$430+(x-900)\times 0.1$	1400万초과	$630+(x-1400)\times 0.1$
※ 공제 한도 : 600만원		※ 공제 한도 : 900만원	

### ② 일시금으로 수령시

- 퇴직금과 동일하게 과세, 즉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분류과세

※ 퇴직소득의 경우 타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되, 일정 범위의 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소득세율 적용

- 퇴직연금 도입에 따라 퇴직(일시)금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축소

<퇴직소득공제>

종 전	개정안
-급여비례공제 : 퇴직급여의 <u>50%</u> -근속년수공제(단위 만원) · 5년 이하 : $30 \times \text{근속년수}$ · 5년 초과 10년 미만 : $150 + 50 \times (\text{근속년수} - 5)$ · 10년 초과 20년 미만 : $400 + 80 \times (\text{근속년수} - 10)$ · 20년 초과 : $1,200 + 120 \times (\text{근속년수} - 20)$ -퇴직소득산출세액 : 공제後 금액을 근속년수로 나눈 後 기본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출	-급여비례공제 : 퇴직급여의 <u>45%</u> -근속년수공제 : 좌동     -퇴직소득산출세액 : 좌동

### 3. 가 타

- 직장 이직 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(IRA) 또는 확정기여형(DC)로 이전·적립하는 경우 급여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

※ IRA : 근로자가 이직시마다 수령한 퇴직(일시)금을 은퇴시까지 계속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

-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(확정기여형 및 IRA) 퇴직소득으로 간주, 퇴직소득세 부과

※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실질적으로 급여지급과 동일한 성격을 가짐

<참고 : 제경부 자료>

## 〈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〉

① 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현행 과세방식 비교

구 분	근로소득	연금소득	퇴직소득
■과세방식	종합과세	종합과세 <small>* 총연금액이 6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</small>	분류과세* <small>*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세액계산</small>
■소득금액 ①	총급여 (-) 근로소득공제  <small>* 근로소득공제율</small> - 500만원이하 : 100% - 500~1500 : 50% - 1500~3000 : 15% - 3000~4500 : 10% - 4500만원초과 : 5%	총연금액 (-) 연금소득공제  <small>* 연금소득공제율</small> - 350만원이하 : 100% - 350~700 : 40% - 700~1400 : 20% - 1400만원초과 : 10%	퇴직급여액
■소득공제 ②	<종합소득공제> - 기본공제 (1인당 100만원) - 연금보험료 공제 (국민연금 불입액 등) - 특별공제 (의료비, 교육비 등)	<종합소득공제> - 기본공제 (1인당 100만원) - 경로우대자 공제 (65세이상 100만원)	<퇴직소득공제> - 정률공제 : 45% - 근속년수 공제 <small>* 근속년수 1년당 30만원~120만원</small>
■과세표준 (①-②)	근로소득금액 (-) 종합소득공제	연금소득금액 (-) 종합소득공제	퇴직소득금액 (-) 퇴직소득공제
■세 율	8~35%	8~35%	8~35%
■산출세액	과세표준×세율	과세표준×세율	연분연승법* 적용

\* 연분연승법 : 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

② 퇴직연금 및 일시금 수령시 과세대상 소득 및 세액계산의 예

- 갑은 DC형 퇴직연금에 '06년도에 가입하여 10년간 매년 10,000,000원씩 불입
-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어 2016년도에 연금으로 수령시 수령액은 15,000,000원임
- 퇴직연금에서 지급될 총지급액(연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 합계액)은 200,000,000원임

<예시1> 연금으로 수령시

① 과세대상 연금소득(총연금액) : 9,750,000원

$$\begin{aligned} & \cdot \text{연금수령액} \times \left[ 1 - \frac{\text{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}}{\text{총연금지급액}} \right] \\ & = 15,000,000 \times \left[ 1 - \frac{(10,000,000 - 3,000,000) \times 10 \text{년}}{200,000,000} \right] \end{aligned}$$

\* 총연금액이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종합과세 대상

② 연금소득공제 : 5,450,000원(490만원+700만원 초과금액의 20%)

③ 기본공제 : 200만원(2인가구), 표준공제 : 60만원

\* 65세 이상일 경우 추가공제(경로우대자 공제) : 200만원

④ 과세표준(2인가구) : 1,700,000원

\* 65세 이상일 경우 과세미달

⑤ 결정세액 : 1,700,000원 × 8% = 136,000원

<예시2> 일시금으로 수령시

① 과세대상 일시금(퇴직소득금액) : 130,000,000원

$$\begin{aligned} & \cdot \text{일시금 수령액} \times \left[ 1 - \frac{\text{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}}{\text{총지금액}} \right] \\ & = 200,000,000 \times \left[ 1 - \frac{(10,000,000 - 3,000,000) \times 10\text{년}}{200,000,000} \right] \end{aligned}$$

② 퇴직소득공제 : 62,500,000원

- 정률공제(45%) : 58,500,000원
- 근속년수 공제(10년) : 4,000,000원

③ 과세표준(①-②) : 67,500,000원

④ 산출세액 : 5,400,000원

- 67,500,000원/10년 = 6,750,000원(세율 8% 적용)
- 6,750,000원 × 8% = 540,000원 × 10년 = 5,400,000원
- \* 연분연승법 적용 세액 산출